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0010055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0년11월15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년12월30일]

www.carepilates.co.kr
jaseatoz@hanmail.net

케어필라테스

정 보 공 개 서

[케어필라테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빅사이트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직동로 49

TEL : 02-577-9670

FAX : 0505-288-9670

문의 : 가맹사업부 02-579-967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서류

- [별첨] 가맹본부 매출 자료
- [별첨] 장비품목 목록
- [별첨] 레슨상품
- [별첨] 오픈준비물품
- [별첨] 매장운영 체크리스트
- [별첨]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빅사이트	케어필라테스	경기도 광주시 직동로 49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03.05.20.	장경원	02-577-9670	0505-288-9670
	법인등록번호	해당사항 없음	사업자등록번호	220-04-8872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대표)	장경원 빅사이트	케어필라테스	경기도 광주시 직동로 49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05.20.~현재		장경원	02-577-9670	0505-288-9670

* 당사는 2017년 기존 케어필라테스 상호에서 빅사이트로 상호를 정정 하였습니다.
다만 브랜드명 케어필라테스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케어필라테스]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케어필라테스	
상 호	케어필라테스 OO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1-0169716-0000
광 고		회사 로고 및 마크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883,297	554,318	328,978	3,267,136	-309,876	-312,844
2022년	1,020,728	774,115	246,612	4,096,165	-64,239	-83,087
2023년	1,007,998	906,464	101,533	2,512,378	36,802	12,828

그 근거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장경원	대표	2008.1.~2009.3.	세란정형외과 부원장	환자 진료
			2009.3.~2009.11.	GF1협회 협회장	업무 총괄
			2003.5.~현재	빅사이트 대표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케어필라테스 (서비스표) 	가맹점운영 광고 및 기타 인쇄물	2007.8.06. 출원 2008.06.30. 등록	출원 제2007-0021055	장경원	2028. 06. 30.
			등록 제41-0169716-000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케어필라테스] 가맹사업 현황

1. [케어필라테스] 을 시작한 날: 2010년 3월 2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3년 5월 20일)

2. [케어필라테스]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케어필라테스	케어필라테스	장경원	2010.3.2. ~ 2017.5.15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8길 23 호정빌딩 4층
빅사이트	케어필라테스	장경원	2017.5.15. ~ 현재	경기도 광주시 직동로 49 1층

3. [케어필라테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케어필라테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스포츠관련	필라테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케어필라테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25	23	2	26	24	2	18	16	2
서울	4	2	2	3	1	2	2	-	2
부산	1	1	-	-	-	-	-	-	-
대구	2	2	-	2	2	-	2	2	-
인천	1	1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3	3	-	5	5	-	3	3	-
울산	-	-	-	-	-	-	-	-	-
세종	2	2	-	2	2	-	2	2	-
경기	6	6	-	8	8	-	6	6	-
강원	1	1	-	1	1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1	1	-	1	1	-	-	-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	-	-	-	-	-	-	-	-
제주	2	2	-	2	2	-	1	1	-

5. 바로 전 3년간 [케어필라테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0	4		1	1	23
2022	23	6		5	1	24
2023	24	0	8		1	16

[케어필라테스]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케어필라테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케어필라테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6	해당없음						
서울	-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2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3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2	해당없음						
경기	6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1	해당없음						
경북	1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1	해당없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당사에서는 2017년부터 가맹점 매출을 보고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정기, 비 정기적으로 본 사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공급받지 않고 있으며 초기 매장구축외 정기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없습니다. 또한 각 매장에서 pos등을 사용하는 곳이 없어 매출을 근거할 자료가 없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케어필라테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케어필라테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6	1265일 (42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2023년]에 [케어필라테스]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2]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28,490	 (비공개)	-	
광고	소계		28,490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판촉	소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 계약된 은행에 예치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양재지점	U뱅킹사업단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번지	02-2002-563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기업금융팀등에 신청서와 함께 예치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케어필라테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8,150,000원[66㎡(20평 기준)VAT포함,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교육비 포함
오픈 준비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인테리어, 설비/정착물 비용	가맹본부 또는 점주 직접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8,150]		
가 맹 비	영업 표지 사용 대가	30% (3,300)	계약체결과 동시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가맹사업법 참조) 1. 당사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숙고기간(14일)을 어겨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당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
			본 계약의 만료시까지 일 할로 계산하여 경과한 기 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 멸되며, 잔여기간의 해당 분의 금액은 반환합니다.

			환을 요구하는 경우	
	Know-how제 공 대가	30% (3,300)	계약체결과 동시	
			위 내용과 같습니다.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 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개업 지원 대가	30% (3,300)	계약체결과 동시	
			위 내용과 같습니다.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 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운영매 뉴얼제 공 등	10% (1,100)	계약체결과 동시	
			위 내용과 같습니다.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 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교육 비	교육비	100% (3,300)	당사에서 정한 교육 수료이전	교육 수료 완료후
오픈 준비 금	오픈시 초도물 품	100% (3,850)	계약체결과 동시	
			위 내용과 같습니다.	오픈 완료 후

2) 당사는 별도의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8,150]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8,150
가입비	11,000
교육비	3,300
오픈준비금	3,85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20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0,236]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본부	35,200	1,760	계약금: 공사시작 전 1일 중도금: 공사시작 후 5일 잔 금: 점포개설 전 3일	공사 전 계약취소	
운동장비	가맹본부	21,186		계약금: 공사시작 전 1일 중도금: 공사시작 후 5일 잔 금: 점포개설 전 3일	설치전 계약취소	장비품목 별첨
간판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 가 직접시공	3,850		계약금: 공사시작 전 1일 중도금: 공사시작 후 5일 잔 금: 점포개설 전 3일	설치전 계약취소	
인테리어감리 비	가맹본부		220	점포개설 전 3일	공사전 계약취소	가맹점사업자 자체시공시 : 3.3㎡ 당 [220]천원 부담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인테리어, 필요설비/정착물에는 전기증설, 상하수도, 철거, 내외부 배기시설, 화장실 시공, 간판 규격외 추가시공, 전면부 샷시공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비용이 부담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인테리어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설계 및 감리대가로 3.3㎡ 기준으로 220천원 비용을 점포개설 3일전 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중 반환조건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한 반환 되지 않으며 시설의 입고 또는 제작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하는 내역에 대한 제반비용 등을 제외하여 반환 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579-9670)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주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 사업자가 내립니다. 이때, 가맹본부의 조건에 맞는 입점후보지를 가맹본부로부터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점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는 입지조건이 가맹사업방향과 상이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해당사항없음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사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음.
강사	-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전과정 이수자 - 필라테스 지도 자격증 취득자 - 그 외 가맹본부에서 제시하는 항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맹계약서 제25조 참조)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케어필라테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별첨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	------	----	------	------	-------------	----

로열티	가맹본부	월 220	다음 월 7일	없음		부가세포함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를후 결정	광고집행실시 3일이전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시 반환 안됨	
관측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관측집행실시 3일이전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관측집행시 반환 안됨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사전 통지	교육 실시 3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가맹본부	사전 통지	교체·보수 후 2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5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아 자료가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 가맹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가맹점의 사무실 및 기타지역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	수시	문의: 가맹사업부 02-579-9670
	- 운영방법 및 계획 파악을 위한 면담 및 자료요청 권리	수시	
고객관리	- 서비스 관찰 및 고객 또는 피고용인과 면접할 수 있는 권리	수시	
장비관리	- 장비 작동 점검 및 기능 점검	수시	
회계관리	- 회원자료 및 회계장부 등 경영전반에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시	
시설관리	- BI적용 및 낙후 시설 개선 요구의 권리	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계약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받는 양수인은 잔여계약기간이 인정되며, 가맹비는 면제하기로 하되 영업 Know-how의 전수 및 교육 등의 비용으로 가맹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원할 경우는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양수인은 신규 계약시의 부담 금액과 동일하게 당사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가맹계약서 제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금액	비고
가맹비	5,500	부가세포함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종료 후의 조치
가맹계약서 제 7 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① 본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즉시 중단 (2) 제3조에 정한 상표, 상호, 간판 등 기타 표시물의 사용금지 및 철거 (3) 잔존채무의 즉시 처리 (4) 2항의 철거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기로 한다. (5) “을” 이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당(본 계약에 명시된 가맹점의 면적) 1,500원씩[매장면적(㎡)X지체일수X1,5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을”은 “케어필라테스(CARE PILATES)” 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갑”

이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는다.

- (7)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케어필라테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케어필라테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는 특수관계인이 없어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케어필라테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권장, 알선 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당사가 [케어필라테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당사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없음으로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레슨상품 리스트 별첨	아래와 같음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절차	

[취급상품 제한내용 및 조건]

취급상품 제한
가맹계약서 제 22 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① “을”은 “갑”의 운영프로그램을 공유, 준수 하며 동일한 브랜드를 가지는 가맹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을”의 매장 내 판매제품은 정당한 사유, 협의 없이 “갑”이 지정한 제품 외에 임의로 공급 받거나 판매 할 수 없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다른 가맹점사업자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상품 리스트

(2023.12월 기준)

구분	금액	할인	비고	가격통보 방법
price(1:1)				인터넷 공지 및 개별통지
10	700,000		2개월 안에 사용	
20	1,330,000	5%	4개월 안에 사용	
30	1,890,000	10%	6개월 안에 사용	
price(2:1)				
10	1,000,000		2개월 안에 사용	
20	1,900,000	5%	4개월 안에 사용	
30	2,700,000	10%	6개월 안에 사용	
price(gruop)				
week	1개월	3개월(5%dc)	한달기준	
주3회	260,000	741,000	한달 12회 기준	
주2회	200,000	570,500	한달 8회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가격통보방법 및 제한]

취급상품 제한
가맹계약서 제 22 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③ 매장 내 판매상품 가격 및 품목은 “갑” 이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 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판매상품별 또는 용역별 소비자 권장가격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④ 판매가격 및 품목의 변의로 인해 동일한 브랜드를 가지는 가맹점이 피해 및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갑” 은 이를 즉각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 할 수 없다. 단, 판매가격 및 품목 등을 부득이하게 변경 또는 인상 또는 인하 할 때 에는 “갑” 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필라테스 레슨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케어필라테스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50m이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구분은 역세권은 각 역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주거지역은 주소지 기준 반경350m 이내로 합니다. 중심상가 상권과 단지상가 상권은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왕복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는 중심상권 맞은편은 100m이상이면 가맹 본부는 영업지역을 선정 할 수 있습니다.

예비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에 별첨되는 상권보호표시도에 가맹계약전 가맹본부와 협의 후 표시하며 위와 같은 사유 또는 그와 유사한 사례 등 영업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쌍방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영업중인 타 가맹점의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영업지역준수-변경사유
가맹계약서 제 4 조 (가맹점 영업지역) ② 영업지역 구분은 역세권은 각 역의 중심상권을, 일반주거지역은 반경 350m기준으로 한다. (별첨. 상권보호표시도의 표시지역) ③ 중심상가 상권과 단지상가 상권은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는 중심상권 맞은편은 100m이상이면 “갑”은 영업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을”의 영업지역은 본 계약서상 별첨된 상권보호표시도에 기재된 내용에 준한다. ⑥ 영업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쌍방 간 합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기존 영업 중인 타 가맹점의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⑦ “을”의 영업지역내의 백화점, 양판점, 할인점과 “갑”이 홍보 목적으로 만든 행사 점포등 특수 점포에는 “갑”이 독자적으로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을”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협의와 동의를 거부 하여서는 안 된다.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케어 필라테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케어필라테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 가맹점 매출 추정 불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케어필라테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사유

가맹계약서 제 5 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③ “을” 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갑” 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등이 제3자 에게 유출 되었을 때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뚜렷한 이유 없이 준수 하지 않을 때 다만, “을” 이 부담하는 교육, 훈련 비용이 동종의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0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가맹계약서 제 6 조 (계약의 해지)

① “갑” 은 다음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해지 사실을 2회 이상 서면통지 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상의 대금지불이 3회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신용 및 이미지를 현저히 떨어뜨린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지시나 담당직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4) 계약 사항의 각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 (5) 가맹점이 의무위반을 시정한 후 다시 동일한 위반을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 (6)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가맹본부와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한 경우

②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물품공급 및 영업지원을 즉시 중단 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0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체결한 계약에 한해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계약서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35조 10항
2. 법률의 개정, 수정 등으로 인한 경우	"
3. 가맹계약 당시와 수정을 요하는 시기의 시장경제등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경우	"
4. 기타 가맹거래유지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당사와의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되는 유, 무형의 손실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액에 대해서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일시

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의 양도
가맹계약서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및 담보제공) ①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점포의营业을 양도, 양수 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은 “갑”에게 서면으로 청구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한다. 단,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기간내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며 “갑”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명의변경, 영업의 양도양수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은 양도 양수일 에 해지 또는 종료 되는 것으로 한다. ⑤ 양수인에 대하여는 잔여 계약기간 내에는 가입비가 면제된다. 단, know-how의 전수 및 교육등의 비용으로 가맹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⑥ “갑”은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을 양수인의 영업활동 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신규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에서 정하는 가맹비 및 교육비가 발생 한다. ⑦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가맹금 납입을 면제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명의 변경 (2) 직계 존비속간 또는 배우자간의 승계 (3) 동업자간의 대표자 명의 변경 (최초 가맹계약시 본 계약상에 동업관계 표시된 경우에 한함) (4)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될때 (5) 법인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 일치할 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잔여계약기간이 인정되며, 가맹비는 면제하기로 하되 영업 Know-how의 전수 및 교육 등의 비용으로 가맹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신규 계약시의 부담 금액과 동일하게 당사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가맹계약서 제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신규 계약 체결(5일 소요) → 운영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 사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위탁	불가능	-		

- ①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면제 한다. 단, 소정의 교육, 지도비는 부담한다. [가맹계약서 제15조 3항]
- ② 가맹사업자의 상속인이 없을시 가맹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그에 따른 모든 권한 및 운영권에 대한 권리는 가맹본부에 귀속된다. [가맹계약서 제15조 4항]
- ③ 가맹점운영에 대한 일부 대리행사에 대해 가맹본부의 승인시 가맹점운영에 대해 대리하며 그 기간과 그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하기로 한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당사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일 지역 내에서는 당사의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소유·운영하거나 제3자 소유 점포의 경영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필라테스 / 요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관리팀 (02-575-967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09:00 ~ 23:00 (14시간)	월 26일 이상(2월,9월은 24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미성년자 이상의 남,여
- ② 가맹본부의 개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케어필라테스 자격증 또는 전과정 이수자
- ③ 그 밖에 근무 조건 및 급여, 종업원수는 가맹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적정인원 및 비용을 결정함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운영/홀	매장 방문 → 매장운영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상시	본사 관리팀	
위생/복장	매장 방문 → 위생/복장 점검 → 관리표 작성 → 완료	"	"	
장비/기물	매장 방문 → 집기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가맹본부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매장운영 체크리스트 별첨.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케어필라테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본부 전체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가맹본부	상품광고	전액 부담	없음	별도 절차 없음	본사자체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또는 가맹점 모집 광고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사업자	매장 자체 회원 모집광고			별도 절차 없음	
개별 행사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 시연회, 할인판매, 경품제공 등의 판촉/광고 행사는 협의후 비용분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최종 분담금 확정 → 행사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 및 판촉 행사의 시기, 횟수, 방법 등은 가맹본부의 판단에 의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 합니다. 그 외 가맹사업자의 자체 회원모집 광고의 경우 가맹본부와 시기, 횟수, 방법 등은 협의 하기로 하되 비용은 가맹사업자가 부담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 중 협의 후 가맹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① 가맹사업자가 자체 진행하는 판촉 및 광고 행사의 모든 책임은 가맹사업자 에게 있으며 가맹본부와 협의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② 그 밖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판촉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간 협의 후 부담 합니다.
- ③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가맹본부와 협의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첫째.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둘째.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니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66㎡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6 주 내외	76,186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일이상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일이상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사업설명 - 상담	1일이상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변호사, 가맹거래사 자문시 7일)	가맹금예치 가맹비11,000 교육비3,300 오픈준비금 : 3,850 계 : 18,150 천원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이상	인테리어 : 35,200 장비 : 21,186 간판등 : 3,850 계 : 60,236 천원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1일이상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20일이상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3일이상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 또는 시장 상황 및 가맹사업자, 해당점포, 그 외 불가항력 등에 의한 사정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알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잡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본부 직접 시공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자양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 또는 설치물 및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부 (02-579-967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부 (02-579-9670)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운영교육, 고객서비스교육, 장비관리교육 등	매장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이전	필수 교육
정기 교육	상품 교육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교육실시 1개월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교육
특별 교육	운영교육, 고객서비스교육, 장비관리교육 등	실습교육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요시 상시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3일	가맹비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 교육	1일~3일	사전통지	
특별 교육	1일~3일	사전통지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가맹본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점포관리자로 근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승인이 있을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가맹본부에서 정한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6조에 따라 15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 당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양재직영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7-11 호정B/D B1호
2	서울	강남직영점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57 성한빌딩 B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4년 8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39,061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카드 매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02-579-967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직전 3개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장비품목 목록(20평형 기준) 단위. 원, 부가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레슨상품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오픈준비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정보공개서 작성일 : 2010년 11월 15일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 III.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I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교육 · 훈련프로그램

비밀유지확약

상기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본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따른 자문을 받는 등 당 가맹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귀사에게 본 정보공개서를 신속히 반환한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자 : 202 년 월 일

가맹 본부 : 케어필라테스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 령 자 : (인) 또는 서명

(※ 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는 2부가 작성되어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정보공개서 작성일 : 2010년 11월 15일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 III.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I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교육 · 훈련프로그램

비밀유지확약

상기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본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따른 자문을 받는 등 당 가맹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귀사에게 본 정보공개서를 신속히 반환한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자 : 202 년 월 일

가맹 본부 : 케어필라테스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 령 자 : (인) 또는 서명

(※ 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는 2부가 작성되어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